

2020년도 제2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0. 22.(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심장섭,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248호)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19건(안전번호 제2020-137039호~138123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137039호~137043호는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안전번호 제2020-137041호는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137044호~137045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한 화 전체분량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51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4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신창환 위원님께서 5쪽, 7쪽, 8쪽에 대해 논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정의견을 주심. 이외 18쪽의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본 위원이 논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의견을 주었으나, 회의록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 B 위원: 본 회의록이 정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A,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회의록 공개는 보류하고, 정제된 발

언으로 회의록을 수정하여 차주에 개최되는 4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록 확정 및 공개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음.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2020-248회 회의록은 보류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주)쇼박스', 'tvN', '일본 MBS' 'Netflix', '담화공', '비수' '일본 TBS', '오다 에이치로', 'EA', '영국 BBC one',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일본 후지TV', '미국 fox', '미국 LIFETIME', '미국 CBS',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TV조선', '미국 CWTV'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51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0-137039~138123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7039호~137042호는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출판물로, 출판사측에서 신고한 건임. 제2020-137043호는 일반인이 신고한 영화 저작물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소설 '☆☆☆ ☆☆☆ ☆', '☆☆☆☆ ☆☆☆', '☆☆☆ ☆☆'를 무료 내지 290 포인트에 각각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5개의 게시물임.

(제2020-137039호 심의대상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웹하드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카카오페이지에서 회당 100원에 제공 중임.

(제2020-137040호 심의대상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게시물은 같은 작품으로, 웹하드에서 20포인트로 제공 중임.

(제2020-137041호의 게시물을 직접 보여주면서)심의 대상 게시물에 접속하면 '제재된 자료입니다.'라고 팝업창이 확인됨. OSP에 의해 제재된 상태임.

(제2020-137042호의 게시물을 직접 보여주면서)안전번호 2020-137042호의 경우 20 포인트로 소설을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2020-137039호~137042호의 게시물은 영리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고, 해당저작물이 합법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고려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제2020-137041호는, 현재 삭제된 상태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제2020-137043호의 게시물을 직접 보여주면서)'☆☆☆ ☆☆☆'는 넷플릭스에서 독점 제공하고 있는 영화로 웹하드에서는 290포인트에 판매중임.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의견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제2020-137041호는 심의 시점에 삭제된 상태인데 전문위원 의견은 경고의 시정권고 의견임. 심의 시점에 게시물이 삭제되었을 경우 시정권고를 부결한 것으로 기억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게시자가 게시물을 직접 삭제한 경우에는 부결의 시정권고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건이 삭제된 경우 부결이 아닌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있음.
- A 위원: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게시자가 스스로 삭제한 것은 시정권고 부결이고 OSP가 삭제한 것은 경고의 시정권고 한다는 것인데 불법복제물을 삭제한 주체를 구별할 수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자체 모니터링한 건에 대해서는 게시물이 삭제된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있음.
- B 위원: 기존 심의했을 때는 게시물이 삭제된 경우 시정권고를 부결한 사례가 있었음.
- A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게시자가 직접 삭제를 했으면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OSP가 삭제했으면 경고의 시정권고를 한다고 기준을 말씀해주셨으나 전문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기준으로 심의했던 사례가 없었던 것 같음.

- 오진해 전문위원: 게시물이 삭제되었더라도 경고의 시정권고를 했던 것은 제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음.
- A 위원: OSP가 삭제했다면 게시자에게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고의 시정권고를 한 것으로 생각됨.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이전에 심의했던 기준과 달라진 것 같음.
- 오진해 전문위원: 앞선 검토보고서의 경우에도 완전히 일관되진 않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OSP가 삭제한 것인지, 게시자가 자진 삭제한 것인지 구분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면 '제재된 게시물입니다.'라고 팝업됨. 제재되었다고 표시되어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다시 접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람.
- B 위원: 누가 삭제했는지에 따라 팝업 메시지가 다르게 표시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해서 팝업 메시지를 다시 보여주며)'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팝업 메시지가 다름. 대부분의 OSP가 구분해서 팝업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음.
웹하드 뿐만 아니라 포털도 관리자가 요청했는지, 보호원이 요청했

는지 구분해서 표시하고 게시자가 삭제하면 게시물이 삭제되고 별도 표시되지는 않음.

- A 위원: 제재된 자료라는 것은 아마도 관리자가 OSP에 notice and takedown해서 삭제된 것으로 보임. 관리자가 삭제요청했을 개연성이 높음.
- A 위원: 누구에게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지?
- 정성희 사무처장: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복제·전송자에게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계정정지에 대해 OSP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OSP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하거나 게시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함.
- B 위원: 민원인 신고 건의 경우 민원인에게 심의 결과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민원 답변 및 시정권고 발송 등의 업무는 보호원의 온라인대응팀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 절차를 확인 후 다음 회차 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A 위원: 보호원에서 OSP에게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하면 OSP가 삭제 또는 전송중단하고 회신을 하는지?
- 정성희 사무처장: 그러함.

- A 위원: 저작권법 133조의3 제2항에 따라 OSP에서 조치결과를 잘 통보하고 있는지?
- 정성희 사무처장: OSP가 전자적인 형태로 시정권고에 대해 통보하고 있음.
- A 위원: 경고를 누구한테 하는지 경고를 하면 실제 이용자한테 경고의 메시지가 가는지 궁금해서 논의한 것임.
- B 위원: 시정권고와 관련해서 보호원의 온라인대응팀에서 시정권고 발송 공문, OSP 회신 공문, 민원인에게 결과 회신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보여주시기 바람.
- B 위원: 관리자가 OSP에게 삭제요청해서 게시물이 삭제되었다면 절차에 따라 이행한 것인데 보호원이 OSP에게 경고의 시정권고하여 OSP가 게시자에게 경고한다면 게시자는 이중으로 경고를 받는 것이 아닌지?
- 정성희 사무처장: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관리자가 OSP에 요청해서 OSP가 게시물을 삭제해도 업로더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지만, 보호원이 OSP에게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면 해당 계정에 대해 경고가 누적되어 계정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B 위원: 검토 의견대로 제2020-137041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해당 저작물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소설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제2020-137041호에 대해서는 경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방송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또한 제2020-137041호에 대해서는 경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이견 없음. 제2020-137041호에 대해서는 경고의 가결 의견이며 나머지 안전에 대해서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7041를 제외한 제2020-137039호~13704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137041호는 경고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7044호~137045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 ◆◆◆◆◆◆’, ‘◆◆◆◆◆◆◆’ 각각 1화~10화, 1화 전체 분량을 각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2개의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37044호,13704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7044호~13704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7044호~137045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사도'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7046호는 영화 '사도'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사도'를 102 포인트에 판매중임. 스트리밍으로 제공함. 2015, 9. 16에 개봉함. 송강호, 유아인, 문근영 등이 출연하였으며, 2020. 10. 19기준 누적관객수 6,247,651명임. 뛰어나고 자유분방한 기질을 지닌 사도는 완벽한 세자가 되고 싶었지만 다그치기만 하는 아버지 영조, 아버지와 아들의 연을 잊지 못한 운명을 그린 비극적 사극 영화임.

(방송 '기묘한 이야기(2020)'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725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기묘한 이야기'를 620 포인트에 판매중임. mkv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6. 7. 15일부터 현재까지 방영중임. 넷플릭스에서 독점 스트리밍 하고 있음. 위 노나 라이더, 데이비드 하버, 핀 울프하드 등 출연하고 있음. 사라진 친구를 찾는 소년들이 정부의 일급비밀 실험의 실체와 기묘한 현상들에 맞서는 SF 호러 드라마임.

(방송 '여름방학(2020)'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7747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여름방학(2020)'을 104 포인트에 판매중임.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0. 7. 17.에 방영함. 정유미, 최우식 출연하며, tvN에서 방영 중. 홈캉스를 컨셉으로 하는 미니멀 라이프 예능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6,390원 구매, 11,000원 대여 가능함.

(방송 '하이큐!! 세컨드 시즌(2015)'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8021호는 네이버 블로그 내 방송 '하이큐!! 세컨드 시즌(2015)'을 무료로 제공 중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 중이며, 일본 MBS에서 2015. 10. 04.에 방영함. TV에서 고교 배구대회 경기를 보고 배구를 시작한 히나타 쇼요의 배구선수 성장이야기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137046호~13812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B,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137046호~138123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7046호~13812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7039호~13812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2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0. 29.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